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술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조례명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제명)
- 개정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임대료 조정(안 제13조)
-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 ~ 안 제13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8조 ~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본소와 지소로 설치운영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능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요원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와 “용평과 진부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운영에 있어 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와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 안 제7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로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주된 권리인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과 주민 감사 청구권을 가진 주민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조례안은 “**임대사업 대상자**”에 “기존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을 “추가신설”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포함하는 취지인데
- 우리군 대상자를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2호, 3호의 사람인

정작 우리군 주민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됩니다.

※3호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있음)

-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안 제7조(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조례제정 9개 시군의 입법례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 대상자(생산자 단체 제외) 정의	"주민등록" 조건 유무
삼척시	관내 농업인	X
영월군	관내 농업인	X
춘천시	농업인(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	X
태백시	태백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시민	X
홍천군	농업인(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	X
횡성군	신청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과 횡성군의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O
양구군	관내에 농경지를 소유한 농가	X
양양군	양양군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X
철원군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O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 의결

- 안 제7조(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을 “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으로 수정하며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을 삭제

- 안 제11조는 “및 영업행위”를 추가하여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로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 및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작업 대행사업”이라 함은 군 또는 그 업무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로 경운, 정지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에게 부과·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

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신기종 농기계의 보급 및 활용교육
5. 그 밖의 농기계 관련 분야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배치) 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정비 및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로 각 사업소당 3명이상 관리요원을 배치·운영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취급조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되, 농지규모가 적은 고령자, 여성,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우선한다.

제8조(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말하며, 1,652㎡미만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제9조(사업 절차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과 관리요원이 영농시기 또는 농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 대행료가 체납 중인 경우: 체납 금액을 다 납부할 때까지
2. 임대 농기계 반환일을 연간 2회 이상 이유 없이 지체하였거나 임대조건 등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내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통보시까지

제11조(양도 및 대여 금지)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임대계약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농기계 운용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7. 그 밖에 농기계 임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임대료 및 대행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② 대행료는 지역 농작업 대행료 수준,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임대료 및 대행료 납부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후 예정된 입고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전액을 감면한다.

제15조(임대료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일찍 입고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6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7조(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 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기계 또는 농업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임원, 여성농업인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

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임대사업·대행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대행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준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지소의 명칭 ·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 소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용 평 지 소	평창군 용평면 새터마을길 4-21	대화면(북부지역), 봉평면, 용평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 부 지 소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6	진부면, 대관령면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제5조 2항관련)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내용	임대기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내용			
	신청사유			
비고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